

第256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1月30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 水道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 水道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4. 水道法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5. 水道法 一部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9.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계속)
22.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5.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남경필·이해봉·김우남·서병수·신중식·엄호성·이재오·박승환·박성범·전여옥·고진화·권경석·노현송·박찬숙·염동연·박재완·제종길·선병렬·전병헌·김기현·배일도·김혁규·이인기·노웅래·허태열·유정복·신국환·김영춘·황우여 의원 발의) 4
- 2. 水道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윤건영·심재철·황우여·김덕규·김영선·송영길·단병호·이근식·허천·김태년·유기준·신국환·김재원·박순자·유시민·전여옥·김영춘·이종구·홍미영·정병국·정성호·정종복·김양수·박성범·이상득·이해봉·엄호성·김영덕·이인기·정화원 의원 발의) 4
- 3. 水道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이윤성·한선교·서병수·백원우·안상수·정문헌·이해봉·이인기·김태환·김양수·엄호성·김재윤·유필우·유정복·안경률·안택수·박형준·박승환·김덕규 의원 발의) 4
- 4. 水道法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김부겸·류근찬·이호웅·김교홍·권오을·이재오·홍준표·신학용·오제세·배일도 의원 발의) 4
- 5. 水道法 一部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효석·노현송·박성범·박순자·박재완·서재관·신중식·엄호성·유정복·이원영·이해봉·이혜훈·장경수·정두언·조경태·최인기·허태열·홍창선 의원 발의) 4
- 6.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 7.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 8.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 9. 漢江水系上水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 法律(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우원식·이상경·단병호 의원 발의)(계속) 5
- 10.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이경재·김영주·김형주·단병호·우원식·공성진·이목희·장복심·조정식·김교홍·김덕규·김선미·김우남·김종률·김태홍·노현송·서혜석·엄호성·유승희·이상경 의원 발의)(계속) 5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영주·김형주·노영민·단병호·우윤근·이목희·장복심·정청래·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6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김재경·이계경·임태희·이해봉·박세환·신상진·김재원·엄호성·안상수·정성호·최규식·박재완·고조홍·안민석·이은영·나경원·이경재·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6
- 1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우제창·채수찬·이계안·조정식·김종률·최규성·배일도·장복심·김태홍·이시중·김혁규·심재엽·최인기·제종길·박승

- 환 의원 발의)(계속) 6
16.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박상돈 · 한광원 · 김태년 · 김영준 · 조정식 · 김기석 · 이호웅 · 제종길 · 한병도 · 우윤근 · 신중식 · 노영민 · 오제세 · 이목희 · 김성곤 · 이광철 · 선병렬 · 최인기 · 김형주 · 김원웅 · 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6
17.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 · 김낙순 · 김종률 · 노현송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신상진 · 서갑원 · 안상수 · 이근식 · 이시종 · 이영호 · 조일현 · 우제창 · 엄호성 · 정성호 · 최인기 · 한광원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6
18.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9.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0. 騒音 · 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강길부 · 박영선 · 정봉주 · 제종길 · 장향숙 · 장복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계속) 8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정부 제출)(계속) 8
22.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김재경 · 윤건영 · 안상수 · 박재완 · 김재원 · 최인기 · 이낙연 · 김재윤 · 김양수 · 이근식 · 정성호 · 이계경 · 김영준 · 이혜훈 · 나경원 · 김석준 · 고조홍 · 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8
23.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강창일 · 우원식 · 정봉주 · 강혜숙 · 이해봉 · 서재관 · 조정식 · 서혜석 · 김재홍 · 최인기 · 김재윤 · 한광원 · 장복심 · 김태홍 · 백원우 · 김형주 · 제종길 · 임종석 · 오제세 · 신상진 · 공성진 의원 발의)(계속) 8
24.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25.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6.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임태희 · 정문헌 · 이군현 · 박계동 · 유기준 · 이인기 · 제종길 · 박종근 · 정종복 · 이계경 · 신중식 · 이성권 의원 발의)(계속) 8
27.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신학용 · 문병호 · 제종길 · 김재윤 · 한광원 · 이영호 · 김우남 · 오영식 · 윤원호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8
28.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3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희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13
31.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김부겸 · 조정태 · 안상수 · 노현송 · 엄호성 · 강혜숙 · 우원식 · 김영덕 · 배일도 · 홍미영 · 신상진 · 이목희 · 임종인 · 김태홍의원 발의)(계속) 13
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이계경 · 정두언 · 김태환 · 이성권 · 엄호성 · 이해봉 · 전재희 · 이은영 · 이재오 · 박계동 · 박찬숙 · 김석준 · 서병수 · 고조홍 · 정희수 · 안상수 · 김충환 · 배일도 · 이원영 · 정화원 · 김태년 · 김문수 · 김영숙 · 이혜훈 · 홍미영 · 최순영 · 박재완 · 김희정 · 이경숙 · 박종근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13
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이명규 · 손봉숙 · 김애실 · 나경원 · 신상진 · 이주호 · 박세환 · 김재원 · 엄호성 · 공성진 · 김태년 · 황우여 · 고조홍 의원 발의)(계속) 13
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8. 技能獎勵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39.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신학용 · 김동철 · 김우남 · 오영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환경부와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일인데 환경부 소관을 먼저 심사 의결한 다음 이어서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순서는 각 소관별로 일괄해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水道法中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남경필·이해봉·김우남·서병수·신중식·엄호성·이재오·박승환·박성범·전여옥·고진화·권경석·노현송·박찬숙·염동연·박재완·제종길·선병렬·전병현·김기현·배일도·김혁규·이인기·노웅래·허태열·유정복·신국환·김영춘·황우여 의원 발의)

2. 水道法中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서병수·윤건영·심재철·황우여·김덕규·김영선·송영길·단병호·이근식·허천·김태년·유기준·신국환·김재원·박순자·유시민·전여옥·김영춘·이종구·홍미영·정병국·정성호·정종복·김양수·박성범·이상득·이해봉·엄호성·김영덕·이인기·정화원 의원 발의)

3. 水道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이운성·한선교·서병수·백원우·안상수·정문헌·이해봉·이인기·김태환·김양수·엄호성·김재윤·유필우·유정복·안경률·안택수·박형준·박승환·김덕규 의원 발의)

4. 水道法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김부겸·류근찬·이호웅·김교홍·권오을·이재오·홍준표·신학용·오제세·배일도 의원 발의)

5. 水道法 一部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효석·노현송·박성범·박순자·박재완·서재관·신중식·엄호성·유정복·이원영·이해봉·이혜훈·장경수·정두언·조경태·최인기·허태열·홍창선 의원 발의)

6.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27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성진 위원, 김형주 위원, 단병호 위원, 배일도 위원, 장복심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2005년 11월 28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세척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하여서 대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잠깐만요. 수도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수도법 관련해 가지고 위탁관련 조항과 관련해서 경과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우원식** 6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소위원장 우원식** 예,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방상수도 39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이미 위탁되어 있고 35개가 위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5개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는 준비과정에 있는데 이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이 그냥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수공이 속해 있는 건교부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이기에 때문에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6개월, 그리고 지금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까지 하면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수공에서는 몇 개 사업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규율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에서는 그런 정도면 새로운 법에 규율되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업이 충분히 깊숙이 들어간 부분은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두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재용** 우원식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정두언 위원** 좀 헛갈리네요.

○**소위원장 우원식** 이 부분은 배일도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셨고 공성진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를 했어도 사업하는 데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소위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8개월

정도의 기간,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35개 사업 중에서 정말 초기 단계에 걸쳐져 있지 않은 나머지 한 30여 개의 사업은 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초래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수공이 속해져 있는 건교부와 그리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을 수공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해서 합의된 내용을 수공이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공이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으면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정리하는 게 맞았지, 지금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수도법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먹는물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 관한 法律(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장향숙·장복

심 · 임종석 · 신상진 · 김형주 · 우원식 · 이상경 · 단병호 의원 발의)(계속)

- 10.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設立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 · 이경재 · 김영주 · 김형주 · 단병호 · 우원식 · 공성진 · 이목희 · 장복심 · 조정식 · 김교홍 · 김덕규 · 김선미 · 김우남 · 김종률 · 김태홍 · 노현송 · 서혜석 · 엄호성 · 유승희 · 이상경 의원 발의)(계속)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단병호 · 우윤근 · 이목희 · 장복심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 · 김재경 · 이계경 · 임태희 · 이해봉 · 박세환 · 신상진 · 김재원 · 엄호성 · 안상수 · 정성호 · 최규식 · 박재완 · 고조홍 · 안민석 · 이은영 · 나경원 · 이경재 · 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 1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우제창 · 채수찬 · 이계안 · 조정식 · 김종률 · 최규성 · 배일도 · 장복심 · 김태홍 · 이시중 · 김혁규 · 심재엽 · 최인기 · 제종길 · 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 16.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박상돈 · 한광원 · 김태년 · 김영춘 · 조정식 · 김기석 · 이호웅 · 제종길 · 한병도 · 우윤근 · 신중식 · 노영민 · 오제세 · 이목희 · 김성곤 · 이광철 · 선병렬 · 최인기 · 김형주 · 김원웅 · 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 17.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발의)(염동연 · 김낙순 · 김종률 · 노현송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신상진 · 서갑원 · 안상수 · 이근식 · 이시중 · 이영호 · 조일현 · 우제창 · 엄호성 · 정성호 · 최인기 · 한광원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8.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9.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9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에서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염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심사보고서를 적어 준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이게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이경재** 저도 적어 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봐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것을 그 내용만, 서두하고 말미 부탁하는 것 빼시고 항목에 관한 것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능한 소위원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

의 사전통지의무를 삭제하고,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 수계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으로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업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중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라는 부분은 사업범위가 수도권매립지 밖의 범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조항으로 인용하고 있는 개정안 제16조제1항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별도의 처벌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무자격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위탁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폐기물관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대안으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취급수수료에 대한 근거,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공익재원 활용에 대한 근거 및 재활용단지의 조성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

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합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며,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심사보고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다 마쳐서 여기서 축조심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래 논의할 때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고 예를 들면 어떤 출연·출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 실제로 다른 공사법에 보면 그 밑의 하위조항에 대통령령에 따른 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 규정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법제정상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에서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염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에서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부터 제 18항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 1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騒音·振動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강길부·박영선·정봉주·제종길·장향숙·장복심·임종석·신상진·김형주·우원식·이상경·단병호 의원 발의)(계속)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정부 제출)(계속)

22.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재경·윤건영·안상수·박재완·김재원·최인기·이낙연·김재윤·김양수·이근식·정성호·이계경·김영춘·이혜훈·나경원·김석준·고조홍·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23.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강창일·우원식·정봉주·강혜숙·이해봉·서재관·조정식·서혜석·김재홍·최인기·김재윤·한광원·장복심·김태홍·백원우·김형주·제종길·임종석·오제세·신상진·공성진 의원 발의)(계속)

24.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5.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임태희·정문헌·이군현·박계동·유기준·이인기·제종길·박종근·정종복·이계경·신중식·이성권 의원 발의)(계속)

27. 環境紛爭調停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문병호·제종길·김재윤·한광원·이영호·김우남·오영식·윤원호·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28.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0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정부에서 제출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성진 위원, 김형주 위원, 단병호 위원, 배일도 위원, 장복심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하였으며, 환경건설팅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건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환경건설팅인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통풍방해, 조망저해, 전자파를 포함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며 환경분쟁과 건축분쟁이 복합될 경우 조망 및 일조방해 등 건축분쟁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

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것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박희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신탁”의 용어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민신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마땅한 대안도 없어서 국민신탁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다만 당시 지적된 보전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이해 곤란 및 안 제19조 중 “임차”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 제2조 정의조항에서 보전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9조 중 “임차”를 “대차”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9건의 법률 중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의결하기 전에 전체위원회에서 별도로 축조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전에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법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목적) 규정과 제2조(정의) 규정입니다.

법률안 전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입니다.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규정부터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규정입니다.

법률안 전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께서 국민신탁법인의 ‘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종길 위원** 심사보고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국민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쓸만한 특별한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마 전문위원들이 박희태 위원님께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알았습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입니다.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규정부터 제16조(재정지원) 규정까지입니다.

법률안 전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5장 보전협약, 제6장 보칙입니다.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규정부터 제22조(모금) 규정입니다.

법률안 전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7장 벌칙 및 부칙입니다.

법률안 전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정부에서 제출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8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환경부 관련 법률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위원 잠깐만요.

정두원 위원입니다.

제가 법안하고 관련이 없지만 환경부 소관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환경부에 국방부 사업으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군사시설을 사전환경성검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뭐냐 하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인데요, 이것이 환경부 고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군사시설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감 결과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조치를 내리면서 환경부로부터는 앞으로 고시 개정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고시 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법 개정보다 거의 더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을 개정하다 보면 그동안에 밀려 있던 온갖 민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고시 개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시설이고 이것을 한 개 더 설치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고 또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국가 안위하고 관련된 시설인데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고시는 개정할 수 없어서 기존의 고시에 있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군사시설의 입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은 공공복리에 못지않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니까 환노위의 의견으로 해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문구도 만들었고요. 이것을 여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 환노위의 입장으로 전달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정두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공공복리라는 문구에 한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안보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보시설은 공공복리시설에 못지않은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장은 안 읽어 봐도 대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의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의 명의로 그렇게 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의 명의로 위원회의 의견을 환경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재용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도법·대기환경보전법·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인 환경컨설팅업 도입,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합 보고제도 도입,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실시,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와 재활용단지의 조성·지원근거 마련,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실시와 시설개량 지원,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 국민신탁운동의 법적근거 마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리발주, 기타 소음·진동업무와 한강법 일부개정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앞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오늘 의결된 법률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장관과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경재** 말씀하세요.

○**우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관련된 불법 사전공사 그 부분이 감사원으로 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장관님이 처음 오실 때도 좀 챙겨서……

감사원에서 감사는 이미 다 끝나 있고 정리한다고 한 지가 거의 8개월쯤 되어 가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 파악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결국 제가 나서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상일** 자연보전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조사는 다 끝내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정리는 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상일** 그 관계는 제가 내부사정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8개월 전에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상일** 예,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감사원에 실무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그쪽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시다라는 연말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우원식 위원**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환경부장관 이재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답변을 조만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는 환경부가 결기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위반한 것이고 어떻게 처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고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산지관리법하고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경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환경부가 같은 공직자끼리 고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원으로 넘긴 것인데, 사실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감사원으로 가서 1년 넘게 오리무중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정 뺏으면, 환경부도 나서기가 어렵고 감사원도 하기가 정 어려우면 제가 하지요.

○**환경부장관 이재용** 제가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누군가 나서서 하고 처벌당하고 이래야 앞으로 관행이 제대로 설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제가 할 텐데 환경부의 최종적인 의사를, 감사원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가 나서서 하든지, 다 못 하겠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재용**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사결과를 확인해서, 그 조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환경부 소관 법률안 의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 관계 법률을 다룰 텐데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노동부 소관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0.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31. 雇傭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제종길·김부겸·조정태·안상수·노현송·엄호성·강혜숙·우원식·김영덕·배일도·홍미영·신상진·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 발의)(계속)
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이계경·정두연·김태환·이성권·엄호성·이해봉·전재희·이은영·이재오·박계동·박찬숙·김석준·서병수·고조홍·정희수·안상수·김충환·배일도·이원영·정화원·김태년·김문수·김영숙·이혜훈·홍미영·최순영·박재완·김희정·이경숙·박종근·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이명규·손봉숙·김애실·나경원·신상진·이주호·박세환·김재원·엄호성·공성진·김태년·황우여·고조홍 의원 발의)(계속)
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技能장려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9. 國家技術資格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남·오영식·김재윤·한광원·이영호·윤원호·김현미·백원우·제종길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29항 정부에서 제

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정부에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부에서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정부에서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성진 위원, 김형주 위원, 단병호 위원, 배일도 위원, 장복심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9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57건의 노동부 소관 법률안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를안 및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김애실 의원·박찬숙 의원·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이들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전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처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시행일이 경과한 개정안의 시행일을 2005년 9월 1일에서 2006년 3월 1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업보건의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해당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명칭, 성분 및 함유량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고,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은 대체토론에서 지적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청소년을 위한 고용촉진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등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통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요양 등으로 인한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은 3세까지,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2세까지 응시연령 상한의 범위를 연장하는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조항은 대기업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학력과 실무경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과 실무경력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대안으로 제안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바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로 하여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녀의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도 해고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대안의 심사에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이 예산 사정 등의 사유를 들어 확대 실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규정 안 제17조의2 제1항·제2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대상 기업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때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의에 수고하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정부에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6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일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이의보다 확인과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대안으로 제출하게 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남녀 사이의 고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별의 문제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담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낸 적극적 고용조치라는 안은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고용조치의 면면을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조치에 대해서 이행할 수단이 마땅히 제안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의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정부가 적극적 고용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후에 평등교육과 같은 것들을,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희롱 관련 조항이 있듯이 평등교육을 사업주에게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여성단체의 견해이기도 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적극적 고용조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후에 고려해서 실질적 남녀고용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의 김애실 의원이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대안으로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재정 때문에 난색을 피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견해가 어떤지와 그 다음에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적극적 고용조치에서 평등교육 실현에 대한 향후 입장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서 많은 법안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김애실 의원 대표발의로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지금 현재 1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출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지원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지금 현재 육아휴직급여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요, 환노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모성보호, 여성권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이미 지난번 산전·산후 휴가급여도 대폭 확대했고 이 방면에 관한 법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요 재정을 추산을 해 보니까 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이 상당히 따르고 매년 1000억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은, 전체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되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논의해서 공론을 통해서 해 주시든지, 몇 년도부터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당장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시행시기를 여유 있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예산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대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소위원장 우원식 이 부분에 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생후 3년 미만까지로 늘리자는 요구가 아주 강하셨기 때문에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마땅치가 않다, 당장 내년은 곤란하다 해서 심사보고서에 굳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노동부가 조문을 만들어 와서 언제까지 유예해 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삽입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요청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방안을 좀 얘기했어야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셔서……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장복심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원칙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도 내년에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기틀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부터로 시행시기를 하면 되니까요, 일단 큰 틀에 3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정부도 같은 입장인데 제가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해 주시면……

모성보호 관련 예산이 매년 100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모성보호 관련 예산이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국가가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틀입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해요소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있으면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할 때 일단은 260몇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 예산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과규정을 최대한으로 양보해도 1년,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

○**배일도 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장복심 위원님 개인 견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제 이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이 기본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정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고요. 이 법안을 3년으로 늘려 놓은 논리적 근거를 저출산·고령화의 해소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도 계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라면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출산의 제약조건이 되는 부분을 재정으로 해결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이나 여성에 대한 장애 요건이 없었어도 애를 많이 낳았고요, 서구에서 저출산 장려책을 지원책으로 썼지만 출산이 장려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적 근거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개인적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성의 권리 문제다, 지금 여성이 사회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실제로 출산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몇 년으로 늘리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재정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제 노동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정을 운용하고 계시는 정부 측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2009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산전휴가 90일을 썼다고 하면 9개월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세에서 3세로 늘어나는 것이 꼭 3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1세까지가 가장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육아휴직을 많이 안 써서 문제인데

이게 확대되면 1세 될 때까지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 썼던 사람이 2세, 3세 구간에 쓰는 사람이 생겨나겠지요. 이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는 현행대로 놔둬도 육아휴직이 늘 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급여가 40만원 정도로 묶여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증가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대략적인 계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2008년을 하든 2009년을 하든 빨리 판단을 해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늘어나는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액을 늘리고 거기에다 대상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 당장 수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재정소요가 상당한데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 보니까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취적으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상당히 급속도로 늘려 나가고 있고 또 이 효과가 출산으로 나타난다면 그 대상 자체가 계속 확대됩니다. 그렇게 추계해서 최소 3년, 조금 정부에 여유를 주시려면 5년 정도만 시행시기를 유예해 주시면……

○**이목희 위원** 올해 육아휴직급여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갈 것이라고 추산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입니다.

작년도에 산전후 휴가자 중에서 육아휴직 간 사람이 9303명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대상을 3세까지로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잠정컨대 지금 현재 산전후 휴가자 중에서 24%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포인트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계산한 것이 어제 소위에서 말씀드린 258억입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은 내년 기준으로 그런 것이

지요? 2008년, 2009년 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겠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이야기는 258억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중소기업의 경우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이후에 대기업까지 늘리기로 한 문제도 있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산전후 휴가급여 내지는 육아휴직급여가 대개 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모성보호라고 할까요 이런 육아, 출산 부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될 잠정적인 수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행시기를 유예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 말씀대로 2009년으로 해 놓고 상황을 봐서 이것을 당기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배일도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의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 대해 얘기하신 것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육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는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폐 여부까지 가져올 만큼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봐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틀 전에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남성의 3분의 1이 부인이 완전한 직장을 가지면 가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가사 분담은 남자, 여자…… 물론 여성의 권리적 측면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이하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8억의 예산이 든다고 할

때, 2009년까지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기 때문에 2009년까지 가는 것보다는 중간점에서 참여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난번에 장관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가 여성들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세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법안을 만들면서 2009년에 실시한다는 부분은 상징적인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58억은 지금 예상되는 것이고 더 많이 될지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나, 저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실시시기를 2008년이나 2007년 하반기 정도쯤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아까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4개 항의 토론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 놓고 지금 막상 가결할 때가 되니까 본질 문제가 나오고 예산 문제가 나오고 경과규정 얘기가 나오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토론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2일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정부의 안을 가져 오셔서 다시 토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나름대로는 다 일리 있는데 정당 간의 정책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이 냈고, 널 때의 기본 조건은 저출산이라는 사항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게 왜 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고령화사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기본 전제는 GDP(1인당 생산량×인구수)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데 돈을 쥐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 육아휴직을 받는 것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고 애를 낳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고용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휴직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휴직문제로 거론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에 들어가는 최소 연한이 한 3년 정도 또는 3살 정도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제출한 법안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장식용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니,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 시기와 맞춰서 통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마련할 수 없다면 그 근거까지 같이 체계 있게 제시해 주셔서 시행 시기를 다소 신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낸 발의자의 취지가 자칫 왜곡되어서 저출산·고령화 해결책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사실 저출산·고령화 정책하고 남녀 고용 평등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낸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차원에서 제기한 것인데, 하여튼 예산 문제와 재정 문제와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마련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안을 만들어서 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3항·제34항·제35항·제36항은 정부가 이 법 시행과 관련된 예산 문제와 실시 시기 등과 연관해서 다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정부에서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정부에서 제출한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9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님!

○박희태 위원 법률안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탈북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특히 탈북자들이 지금 이 사회에 팽개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립무원의 사회에서 정말 생존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는 탈북자가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고용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안 왔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고용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입니다.

우선 늦어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늦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아가서 바로 일선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지시도 해서 제가 1차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7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희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700명 정도였고, 3700명도 현재의 상태를 일선에서 정확히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이 정도로는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기가 면구스러운 결과여서 그 3700명에 대해서 일일이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지시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저희 노동부가 챙겨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노동부가 어떻게 이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노동부 소관 외 나머지 3000여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지금 탈북자의 모든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이름 석 자만 오지,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들이 저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찾아와야만 비로소 그 사람의 거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가 7000명 모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결함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 시스템상으로는 3700명이 저희 노동부를 최초로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관리되어 있으나 몇 년 지난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구멍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저런 것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노동부에서 그렇게 방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원 측과 협조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면 취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은 반드시 노동부에……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일선의 고용안정센터입니다.

○박희태 위원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숙지시키도록 하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또 유엔에서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운 인권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우리 국민들을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제2의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도 똑같이 생존조차 하기 어려운 무참한 인권침해 상태인데,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인권입니다. 이것에 대

해서 국가가 무관심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포기하는 상태라고 할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낫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뒤에 북쪽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사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 말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센터에 대한 준비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한 분들의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갖춰 주실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안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보완해 주신 우원식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안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기반이 확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보다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동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은 향후 제도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위 법령의 마련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소위원장님 등 소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법률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어서 이번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 그리고 내일까지 다루게 될 비정규직 법안, 그다음에 잠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공 성 진	김 영 주	김 형 주	단 병 호
박 회 태	배 일 도	신 상 진	우 원 식
이 경 재	이 목 희	이 인 제	장 복 심
정 두 언	제 종 길	조 정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참석자

환 경 부			
장 차	관 관	이 박	재 선 용 숙
정책홍보관리실 실 장		이 박	규 희 용 정
재 정 기 획 관		고 김	재 상 영 일
환 경 정 책 실 장		김 김	경 경 식 호
자 연 보 전 국 장		문 유	정 영 창 수
대 기 보 전 국 장		윤	중 수
수 질 보 전 국 장			
상 하 수 도 국 장			
자 원 순 환 국 장			
노 동 부			
장 차	관 관	김 김	대 대 환 성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고 용 정 책 본 부			
본 부 장	노 민 기		
고용정책심의관	이 채 필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 상 진		
근 로 기 준 국 장	박 종 철		
산업안전보건국장	송 영 중		
정책홍보관리본부			
재 정 기 획 관	조 재 정		

○기타 참석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 장	박 대 문
----------------	-------

【보고사항】

○의안 회부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05. 11. 22 정부 제출)

1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